



금융감독원

보도자료



금융보안원
FINANCIAL SECURITY INSTITUTE

보도	배포 시	배포	2025.5.20.(화)	
담당부서	금융감독원 보험검사3국	책임자	국 장	김재갑 (02-3145-7270)
		담당자	팀 장	이동재 (02-3145-7260)
	금융감독원 보험검사1국	책임자	국 장	정영락 (02-3145-7790)
		담당자	팀 장	권순표 (02-3145-7770)
	금융감독원 보험검사2국	책임자	국 장	서창대 (02-3145-7680)
		담당자	팀 장	임재동 (02-3145-7510)
	금융보안원 사이버대응본부	책임자	본부장	권기남 (02-3495-9002)
		담당자	부 장	김영태 (02-3495-9400)
	생명보험협회 경영지원본부	책임자	본부장	최종윤 (02-2262-6614)
		담당자	부 장	김희경 (02-2262-6658)
	손해보험협회 기획관리본부	책임자	본부장	김지훈 (02-3702-8524)
		담당자	부 장	방병호 (02-3702-8530)

GA 개인정보 침해사고(해킹) 발생 경과 및 향후 계획

I 침해사고 발생 개요

- **(인지 및 초동대응)** '25.4월 국가정보원이 일부 GA(법인보험대리점, 2개사)의 개인정보 침해사고(이하 '해킹') 정황을 최초 인지*하였으며,
 - * 다크웹(일반 검색엔진으로는 접근 불가능하고 특수한 경로로만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)에서 신원미상의 해커가 GA의 개인정보를 탈취·공개하려는 정황 확인
 - 금번 해킹이 보험영업지원 IT업체(이하 '솔루션社')에서 비롯된 정황도 확인됨에 따라 금융보안원이 GA 및 솔루션社에 대한 조사·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.
- **(발생 경위)** 솔루션社 개발자가 이미지 공유사이트(해외)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악성코드 링크를 클릭하였고, 이에 개발자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 - 상기 개발자 PC에는 고객사(GA) 웹서버 접근 URL 및 관리자 ID/비밀번호가 저장(브라우저의 자동 저장 기능)되어 있었으며,
 - 악성코드로 인해 동 PC에 저장되어 있던 GA 14개사(해킹 발생 2개사 포함)의 웹서버 접근 URL 및 관리자 ID/비밀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.

II 개인(신용)정보 유출 현황

◆ 해킹 발생 GA 2개사(A법인보험대리점/B법인보험대리점)에 대한 금융보안원의 점검 결과 및 관리자 ID/비밀번호 등이 유출된 여타 GA 12개사에 대한 점검 진행 상황을 정리

□ (A법인보험대리점) 고객 및 임직원 등 908명(고객 349명, 임직원/설계사 559명)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,

- 일부 고객정보(128명)의 경우 가입한 보험계약의 종류, 보험회사, 증권번호, 보험료 등 신용정보주체의 보험가입*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(신용정보)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* 보험가입 정보 외 보험금 지급 및 질병 관련 정보 등은 보유하지 않음

□ (B법인보험대리점) 고객 19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,

- 다만, 고객의 보험계약에 관한 거래정보 등 신용정보의 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□ (여타 12개사) 생·손보험회를 통해 진행한 보험회사(위탁사)의 GA(수탁사) 점검(로그기록 분석) 결과, 1개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되었으며,

※ 2개사에서는 침해 정황 확인(개인정보 유출 정황은 없음)

- 유출량은 매우 적은 것으로 추정되나 보다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전문기관인 금융보안원을 통해 추가 검증을 실시(12개사 전체 대상)할 예정입니다.

※ 전반적인 침해실태 파악을 위해 솔루션사의 서비스를 사용 중인 여타 회사(43개사)에 대해서도 이상 IP 접속 확인 등 필요

< 개인(신용)정보 유출 현황 >

회사명	고객 정보	임직원/설계사 정보	합 계
A법인보험대리점	349명 (성명/주민번호/전화번호 등)	559명 (성명/전화번호 등)	908명
B법인보험대리점	199명 (성명/주민번호/전화번호 등)	-	199명

Ⅲ 향후 계획

① 개인(신용)정보 유출사실 對 고객 통지 및 2차 피해 예방 조치

- 정보 유출 GA·보험회사로 하여금 관련 법령*에 따라 개인(신용) 정보 유출사실을 고객에게 조속히 개별 통지토록 하고,

* 「신용정보법」(제39조의4 제1항) 및 「개인정보보호법」(제34조 제1항)

- 보험회사에게는 유출 개인(신용)정보와 관련된 2차 피해 예방*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재차 요구할 계획입니다.

* 유출 정보를 악용한 보험계약대출(약관대출), 적립금 중도인출, 보험계약 해지·변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에 유의를 요구

② 피해상담센터 설치 및 업계 유의사항 안내

- 정보 유출 GA·보험회사 내 피해상담센터*를 설치하여 유출로 인한 피해 접수, 관련 제도 문의 등을 적극 상담·대응할 예정이며,

* 고객 통지문에 안내 예정

-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GA·보험회사에 대한 ID/비밀번호 관리 강화, 보안 취약점 점검, 불필요한 고객정보 삭제, 솔루션사에 대한 보안관리 강화 등을 재차 요구*할 계획입니다.

* 향후 GA·보험회사 검사 시 신용정보 관리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볼 방침

③ 현장검사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 지속

- 개인신용정보 유출 GA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필요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,

- 향후에도 금융감독원·금융보안원·생명보험협회·손해보험협회는 빈틈 없는 대응을 위해 국가정보원,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지속 공조·소통해나갈 예정입니다.

※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위반과 관련해서는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사실관계가 보다 명확히 파악될 수 있도록 공조

IV 보험소비자 당부사항

- ◆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오니 보험소비자 여러분께서는 과도한 우려나 불필요한 오해를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,
 - 다만, 피해 발생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당부사항 및 필요 조치를 주지·이행하여 주시기 바람

1 개인정보 유출사실 통지를 빙자한 스미싱 등 유의

- 개인정보 유출사실 통지를 빙자한 스미싱*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금번 개인정보 유출 관련 對 고객 통지(휴대폰 문자메시지/이메일 이용 예정) 시 URL은 일체 포함하지 않을 예정입니다.
 - * 문자메시지(SMS)와 피싱(Phishing)의 합성어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전자 금융사기를 통칭
- 보험소비자 여러분께서는 개인정보 유출 등을 언급하며 URL 링크를 클릭토록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수신하는 경우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울러, 금융감독원·금융보안원·GA·보험회사 등은 개인정보 유출 해소 등을 빌미로 금전이나 앱(App) 설치를 요구하지 않으니, 이러한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 유출 피해고객은 금융회사 홈페이지/앱(App) 비밀번호 변경 요망

-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 홈페이지/앱(App)에 접속, 금융거래를 시도하는 행위도 우려*됩니다.
 - * 특히,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아이디,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경우
- 개인정보가 유출된 보험소비자 여러분께서는 홈페이지/앱(App) 접속을 위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